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 - 94
----------	---------

제출년월일 : 2011.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제2의 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시책에 맞춰 국외입양 축소 및 혈연 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인해 저조한 국내 입양을 촉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아동, 요보호아동, 입양아동, 입양부모, 입양신고일, 입양축하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요보호아동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함

나. 지급기준(안 제3조)

-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함.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함

다. 지급대상(안 제4조)

- 입양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입양축하금 지급일까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양부모로 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함

라. 지급신청(안 제5조)

-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시 구비서류를 규정함

마. 지급절차(안 제6조)

- 구청장은 규정된 확인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제정근거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책임)

4. 조 례 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2012년 예산에 편성 필요

가. 소요예산 : 1,500만원

나. 산출기준

- 비장애 입양아동 11명 x 100만원 = 1,100만원
- 장애 입양아동 2명 x 200만원 = 400만원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1. 10. 13 ~ 11. 02 (제출된 의견 없음)

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 결과 : 원안동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11.10) : 수정의결

붙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촉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요보호아동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아동별로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 입양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입양축하금 지급일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양부모로 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제6조(지급절차) ①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

②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단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환수조치) ①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환수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제8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일) 제4조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입양아동을 입양신고한
입양부모에 대해 적용한다

